

“신뢰받는 감사원, 국민과 함께 합니다.”



감 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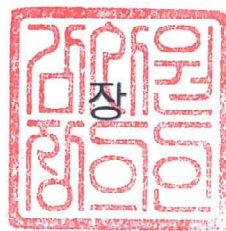
바른감사
바른나라

수신 고용노동부장관
(경유)
제목 심사청구의 처리

1. 귀 부에서 2019. 5. 29.(산재보상정책과-2627) 우리 원에 보내신 청구인 [REDACTED] 종
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REDACTED])의 “요양급여 승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심리하고 불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보하
오니 처분청에도 위 결정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인이 이 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문 사본을 감사원(심사1담당관)으로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심사결정서 등본 1건 1부. 끝.

감 사 원



부감사관 [REDACTED]

심사1담당관 [REDACTED]

협조자

시행 심사1담당관-1172 (2019. 11. 12.)

접수

우 0305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삼청동 25-23)

/ www.bai.go.kr

전화번호 [REDACTED]

팩스번호 [REDACTED]

/

/ 비공개(1, 6)

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9-심사-333

제 목 요양급여 승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redacted]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redacted])
[redacted]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redacted]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redacted] 건설 소속 근로자 [redacted]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18. 11. 21. 15:30경 “[redacted]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¹⁾에서 바닥 방수공사 작업 중 리어카에 콘크리트 폐기물을 하역하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 3. “요추 제2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9. 1. 28. 처분청에 요양급여(구분: 최초요양)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재해조사,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2019. 2. 13.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구분: 최초요양)의 지급을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redacted] 소재

구분 (작성자)	내용	날짜
재해자 의견 (재해자)	▶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관리자한테 얘기하지 못한 것은 크게 다쳤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과 아프다고 하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 같은 생각에 얘기하지 못하였고, 사고 당일은 단순 근육통으로 알고 약국에서 진통제를 먹고 참았으나 다음 날 고통이 심해져 최내과병원에 내원하여 진통주사를 맞게 되었음 ▶ 원도급사 관계직원에게 보고하지 못한 것은 일용직으로 원도급자를 알기 어려웠고 입원 후 하도급 사업장인 (주 ■■■ 건설에는 산업재해로 입원한 사실은 통보하였으나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청구인이 원도급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임	-
보험가입자 의견서 (청구인)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목격자가 없으며 사고 다음 날 이후에도 이틀간 작업을 하였으며 재해자가 다른 현장에서 다쳐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수차례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9. 1. 29.
진술서 (동료근로자)	▶ 11월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해 2018. 12. 4. 전화를 걸었더니 재해자가 12. 3.에 입원하였다고 하였고 현장에서 일하다 빠졌한 것 같다고 하였음. 산재처리하기가 애매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서로 금액차이가 커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병원비와 요양비도 지급하려 하였으나 요양기간이 길어져 원도급사에 보고함	2019. 3. 28.
진술서 (동료근로자 3인)	▶ 사고 당시 재해자는 지하 2층에서 쓰레받기로 고인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재해자의 사고 사실은 사고 이후 들어서 알게됨	2019. 1. 29.
녹취록 (회사관계자)	▶ “일하시다 아프셨나 봐요. 원래 좀 무거운 거 아줌마 둘이 드시는 건데 다른 분이 워낙 설렁설렁 하시는 스타일 있잖아요. 다른 분.” “그 분은 그래 가지고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혼자 쓰레기 버리시다가 다치신 거예요. 무거운 거” ▶ “포대는 아니고 그냥 돌맹이 같은 거 쌓아 놓은 건데, 그니까 여자가 들기 그냥, 젊은 여자가 들어도 좀 묵직한데 나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둘이 드셔야 되는데 다른 아줌마들은 빗질만 슬슬하고 그러니까 답답하셔서 혼자 드신 거예요...(생략)...아주머니가 둘이 드셨으면 안 다치셨을 꺼 아니냐 하니까 그 언니 답답해 가지고 그냥 나 혼자 들다가 다쳤다고”	2018. 12. 24.

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은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구분 (의료기관명)	내용	날짜
진료기록지 (■내과의원)	▶내원일시: 2018. 11. 22. ▶주증상: lower back pain ▶진단명: 혈관절증 골반 부분 및 대퇴	2018. 11. 22.
진료기록지 (■정형외과의원)	▶내원일시: 2018. 11. 29. ▶사고경위: 11월 21일 작업 중에 허리통증 호소함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8. 11. 29.
진료기록지 (■정형외과병원)	▶입원일자: 2018. 12. 3. ▶열흘 전부터 일을 심하게 한 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 입원 ▶진단명: 요추 2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2018. 12. 3.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정형외과병원)	▶상병명: 요추 제2번 압박골절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무거운 물건을 운반 중 상병이 발생함. 허리 통증을 호소함. 상기 환자 X-ray 및 MRI 소견상 요추 제2번 압박골절로 진단되어 보조기 착용 및 보존적 치료 중임	2019. 1. 28.
자문의 소견서 (처분청)	▶2018. 11. 21. 15:30경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하스리작업 중 리어 카에 콘크리트 폐기물 하역작업을 하다가 과도한 무게로 인해 허리에 압박골절 당함. 2인 1조로 작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함에 따라 사고 발생 ▶MRI상 급성 소견 확인되며 외상력 인정됨. 수상 이후 일정기간 작업 중 사는 가능함. 요양기간 인정 타당	2019. 1. 29.

4)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재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진료받은 기록은 없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2)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설사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가 없다 하더라도 재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다음 날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았으며 재해자가 진술한 사고 경위와 재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방문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수상 경위가 일치하는 등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점, ②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재해자가 이 사건

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에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③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자문의사에게 자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자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 11 . 12 .

이는 등본임
서기 2019년 11월 12일
감사원 2여기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7. (생략)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생략)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42조(자문의사)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43조(자문의사회)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회의를 둔다.

② 자문의사회회는 자문의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의사회회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략)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